

1. 개정 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소형 면허로 조종가능한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하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을 위한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일원화하고 제작자등의 부품 공급 및 교체주기 공표 의무화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안 제42조의2)

- 1)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54조)

- 1)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검사 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하여 관리 강화

다. 타워크레인 부품의 공급 및 교체 주기 등 공표 의무화(안 제55조)

- 1)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관련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안 제73조, 별표 19의2, 별표 20 및 별표 21)

- 1)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함

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 도입(안 제74조 및 별표 20)

- 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교육 수료가 가능하도록 함

바.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검사부적합 및 시정권고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검사부적합통지서”를 “건설기계 검사부적합 및 시정권고통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장치를”을 “장치와 과부하방지장치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3호서식의”로, “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를 “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인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를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2. 검사대행자

제5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제작자들은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사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이 있거나 대체 가능한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타워크레인 제작자들은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들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인쇄물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74조제2항 중 “내용”을 “내용(제7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실기시험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채점 기록 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다)

별표 20의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다)은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다)

별표 22 제2호 사목1) 중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표 사목3) 중 “0.1퍼센트”를 “0.08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별표19의2제2호, 별표20제5호 및 별표2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 74조 및 별표20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19의2제1호는 2021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이후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별표 19의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 ⑤ (생략)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u>이의 시정을 권고하고</u> ,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⑥----- <u>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검사부적합 및 시정권고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u>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⑦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u> 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	⑦----- <u>건설기계 검사부적합 및 시정권고통지서</u> -----.

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u>장치를</u> 말한다.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 ----- ----- ----- ----- <u>장치와 과부하방지장치</u> 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생략)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u>별지 제23호서식</u> 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②----- ----- ----- ----- ----- <u>별지 제23호서식</u> 의 ----- ----- ----- -----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단서 삭제>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 ----- ----- ----- ----- -----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 ----- ----- ----- ----- ----- ----- ----- ----- ----- -----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 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 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 신고) ----- ----- ----- ----- ----- ----- ----- ----- ----- ----- 검사대행자----- ----- 1. ~ 4.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 -- -----

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illegible]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

해당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제3호의 시험기관에서 확인 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 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
우에는 영 제18조의3제2항제1
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

3. (생략)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illegible]

1. -----
----- 제외한다-----

2. 검사대행자

3. (현행과 같음)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② ----- ----- 내용(제7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실기시험을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채점 기록 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신설>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제73조제2항 관련)

1. 2020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붐) 최대길이	50m 이하	35m 이하
지브(붐) 최대모멘트	686kN · 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비고

1. 지브(붐) 최대모멘트는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와 인양가능한 최대하중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서 모든 지브 길이에서 최대모멘트 값 이하이어야 한다. (예: $24\text{m} \times 2.9\text{톤} \times 9.8\text{m/s}^2 = 682\text{kN} \cdot \text{m}$)
2. 소형 규격(설치높이 제외)에 적합한 경우 마스트 1단에 조중사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격하중, 지브(붐) 최대길이, 지브(붐) 최대모멘트를 표시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2020년 7월 1일부터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붐) 최대길이	40m 이하	30m 이하
지브(붐) 최대모멘트	588kN · 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비고

1. 지브(붐) 최대모멘트는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와 인양가능한 최대하중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서 모든 지브 길이에서 최대모멘트 값 이하이어야 한다. (예: $20\text{m} \times 2.9\text{톤} \times 9.8\text{m/s}^2 = 568\text{kN} \cdot \text{m}$)
2. 소형 규격(설치높이 제외)에 적합한 경우 마스트 1단에 조중사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격하중, 지브(붐) 최대길이, 지브(붐) 최대모멘트를 표시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제74조제2항 관련)

소형건설기계	교육 내용	시간
1.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3.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4. 공기압축기, 쉐석기 및 준설선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 라. 조종실습	2(이론) 4(이론) 2(이론) 12(실습)
5.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나. 양중작업 일반 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4(이론) 12(실습)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고,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승선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작업을 위한 정상적인 조종위치에서 조종실습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2.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3. 조종실습은 해당 종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강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4.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5. 이론교육의 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

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중기운전)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6.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7.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쉐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에 대해서는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8.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은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기중기
11.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채석기	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4.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향타 및 향발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17.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18.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별표 19의2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비고

-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라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위반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증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 3)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 4)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5)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않는다.

나.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1호	취소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	법 제28조제2호	취소

[illegible]

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5)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취소 취소 취소
아.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8호	취소

건설기계 검사부적합 및 시정권고통지서

건설기계검사 ☐ 부적합 ☐ 시정권고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예상정비 소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항목 및 사유			
※ 본 통지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함. 수령인: (서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의 부적합·시정권고 내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 : 인 (문의전화 :)			
1.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일부터 10일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이 통지서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정권고 처분된 건설기계는 시정권고 사항을 정비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8g/㎡(재활용품))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인(변경승인): 15일 신고(변경신고):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 7일	
신청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			규격		
건설기계형식					
원동기형식					
제작사명(제작국) (전화번호:)					
변경승인신청(신고)의 경우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귀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형식승인: 520,000원 형식변경승인: 260,000원 형식신고: 420,000원 형식변경신고: 210,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 20,000원 ※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함)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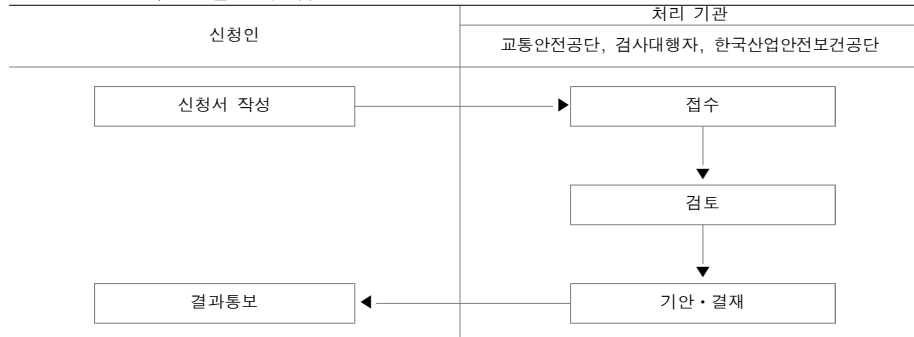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나. 성적서류 사본

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다만,구조성능 시험확인서 첨부시는 5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본사			
	공장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 및 규격	
원동기 형식			제작일자	. . .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자	. . .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검사대행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구비서류		수수료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 첨부시 수수료 없음		○ 최초신청: 252,000원 (출장검사시 447,000원) ○ 변경신청: 178,000원 (출장검사시 300,000원)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 첨부시 수수료는 없으며, 그 외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